

서울고등법원 2018. 9. 12 선고 2017나2074901 판결 [점유회수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18. 9. 12 선고 2017나2074901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1. 24 선고 2016가합574630 판결

전문

원고,항소인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F

피고,피항소인 1. 주식회사 한진중공업

2. 파산자 보스코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

변론 종결 2018. 7. 18

판결선고 2018. 9. 12

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1. 24. 선고 2016가합574630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[수정하는 부분]

○ 제1심 판결문 제2면 저행의 '원고' 기재를 'A 주식회사(이하 '父'이라 한다)'로, 이하제4면 제2행까지의 각 '원고' 기재를 각 ...로 각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.

『 사. A은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 중이던 2018. 3. 8. 대구지방법원 2018회합10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, A의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관리인으로 되었다.

이후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(이하에서는 A과 원고를 모두 '원고'로 통칭한다).

j

○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의 f받아들이지 아니한다'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.

『 (원고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과 견련성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,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 등은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,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점유회수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.

한편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의하더라도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부의 점유가

현재는 덕수궁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게로 이미 이전된 상태라는 것이고,을 제21,22호증의 각 기재및
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하여 받은 2016. 12.20.자
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이 이후 가처분이의 재판에서 취소·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.

이에 의하면 원고의 점유회수 청구는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점유하고 있지도않은 자를 상대로 그
반환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는바,원고의 청구는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) j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,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이를 각
기각하기로 하여,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장석조판사 강완수판사 노재호

별지